

교육부령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 관 명 (부 서 명)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
연 월 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 이유

디지털 소통이 일상화된 환경에 걸맞게 독학학위취득시험 공고·변경공고 및 안내 방법을 변경하고, 독학학위취득시험 일부 과정 면제 자격과 유사한 자격을 일부 과정 면제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독학학위취득시험 실시계획 및 변경 사항을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안내하도록 변경함(안 제7조 제1항 및 제7조제2항 개정)

나. 독학학위취득시험 일부 과정 면제 대상에 「경찰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 이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 합격자를 포함함 (안 제4조의2제1항제5호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독학학위법 및 동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제5호 중 “「경찰공무원 임용령」”을 “「경찰공무원 임용령」
및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방송 등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를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정보
통신망 등을 이용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일간신문”을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2(각종 시험합격자 및 자격·면허 취득자에 대한 시험면제 범위 등) ①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이란 다음 각 호의 시험을 말한다.		제4조의2(각종 시험합격자 및 자격·면허 취득자에 대한 시험면제 범위 등) ①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경찰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 선발시험		5. 「경찰공무원 임용령」 및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		
6. ~ 8. (생략)		6. ~ 8.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7조(시험 및 합격자의 공고 등)		제7조(시험 및 합격자의 공고 등)		
① 원장은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험실시계획을 공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u>일간신문에 공고하고 방송 등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u> 안내하여야 한다.		① ----- ----- ----- ----- <u>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u>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사항을 변		② -----		

경하려는 경우에는 시험일 10일 전에 <u>일간신문</u>에 변경공고를 하 여야 한다. ③ (생 략)	----- --- <u>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u> <u>페이지</u>---. ③ (현행과 같음)
--	---